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89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 장경태・이건태・박홍배

이기헌 • 박지원 • 전현희

이성윤 · 김용민 · 박균택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 검사급"을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재산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			
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			
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			
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			
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			
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5		
법관과 <u>대검찰청 검사급</u> 이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의 검사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